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의자: 박춘선 의원 외 29명

나. 의안번호: 제3269호

다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0일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
2. 제 안 이 유

○ 본 조례 제18조 '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'에 관한 사항이 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시행(2025.9.29.)된바,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'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' 조항 삭제(안 제18조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
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(제정·시행 '25.9.29)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회기 조례 개정 (의안번호 제3265호)으로 「생태계 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」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18조¹⁾에 규정되어 있는 「생태계 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」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해당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1) 제18조(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) 시장은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, 생태계교란 생물,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
2. 생태계교란 생물,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·방제
3.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,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